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459 부동산임의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2. 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이동필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별지 기재와 같음			최선순위 설정	2012. 3. 21. 가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4. 5. 20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조사된 임차내역없음										
<비고>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해당사항없음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해당사항없음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1.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										
2. 공유자의 우선매수권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,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 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										
3. 별지와 같음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459

[물건 1]

-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지리 935-4
대 452m²

매각지분 공유자 전호택 지분 3/24 전부

-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지리 935-4
[도로명주소]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지동길 268-52
위 지상
세멘블록조 세멘기와지붕
단층주택 82.64m²
세멘블록조 스투트지붕
단층창고 21.49m²
세멘블록조 스투트지붕
저장고 15.00m²

제시외 2-1 가닥 철파이프조 2.44m²

매각지분 공유자 갑구 순위번호 제2번 전호택 지분 3/24 전부

-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지리 935-5
과수원 21750m²

매각지분 공유자 전호택 지분 3/24 전부

감정평가액

114,848,470

회차

기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6.02.20	27,574,000	2,757,400
2회	2026.03.20	19,301,000	1,930,100
3회	2026.04.17	13,510,000	1,351,000
4회	2026.05.22	9,457,000	945,700

일괄매각 및 지분매각. 제시외 건물 포함. 공유자우
선매수권 행사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있음. 목록3 농지취

특자격증명 요약(미체출시 보증금 미반환). 목록(2-가)
공부상 "세멘기와지붕"이나 실제 "스레트지붕"임. 목
록(2-나) 공부상 "창고"이나 실제 "주방 및 화장실"임.
목록3 지상에 "타인 소유 작물 및 시설물"이 소재하
며, 이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되는 점과 일부 현황 "도
로 및 경사지"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. 목록1 지적도상
맹지. 본건 장기간 공실상태인 폐가임.

